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찬성 연서를 해 주신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‘그레이트 한강’사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를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.
- 이에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며,

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하여 한강버스 및 선착장 시설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2조제2호라목을 신설, ‘대중교통’에 도선을 명시토록 하여,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2조제3호마목을 신설하여 ‘대중교통시설’에 도선장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반기 정기 운항을 앞두고 있는 ‘한강버스’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